

수원지방법원 2021. 12. 7 선고 2021가단5573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
담당변호사 송진규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600/7,380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600/7,38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9. 10. 15. 접수 제100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지창구

청 구 원 인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성립

원고는 2018. 8. 23.경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'D' 이라고 합니다)로, 보험가입금액을 6,128,000원으로 하여, C와 D 사이의 렌터카임대차계약(주계약)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 이라고 합니다)을 체결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의1 : 이행(지급)보증보험 청약서, 갑 제1호증의2 : 보험가입내용).

보험계약자	피보험자	보증내용	보험기간	보험가입금액
C	D(주)	렌터카임대차계약에 따라 차량인도 이후 발생하는 임차료, 초과운행부담금 및 해지위약금 지급보증	2018.8.23. ~ 2023.8.22.	6,128,000원

그런데, C가 주계약을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2020. 5. 29. 발생함에 따라, 원고는 2020. 6. 26. D에 보험금 6,128,000원을 지급하여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(이하 '이 사건 구상금채권' 을 가지게 되었는데(갑 제2호증의1 : 보험금청구내용, 갑 제2호증의2 : 입금확인증), 2021. 8. 10. 기준 위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6,732,400원(원금 6,128,000원 + 지연손해금 604,400원)입니다(갑 제3호증 : 지연손해금 산출내역).

나. C의 재산처분행위

C는 강원도 삼척시 E 임야 21950.5㎡ 및 F 임야 1560.5㎡의 각 7380분의 600

지분(이하 ‘이 사건 각 토지 지분’이라고 합니다)을 소유하고 있던 중,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의 2019. 10. 15.자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 계약’이라고 합니다)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9. 10. 15. 접수 제1002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(갑 제4호증의1, 2 ;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).

2.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
가. 손해행위취소

1) 손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
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80705 판결은 「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손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손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」고 판시하면서,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손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.

그런데,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 ② 가까운 장래에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③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는 때로부터 약 7개월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

에
입니다.

2)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고).

그런데, C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,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위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 명백한바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.

한편, 2021. 8. 10. 기준 C의 신용조회정보 상 금융연체 금액이 34,575,000원, 기타연체 금액이 14,116,000원인 점에 비추어(갑 제5호증 : 신용조회정보), C는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라 할 것입니다(만약, 피고가 C의 자력 여부를 다룰 경우 원고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C의 무자력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).

나. 원상회복청구

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별도의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말소된 바가 없으므로, 원고는 원상회복청구로써 지분전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물반환청구를 구합니다.

이에,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9. 10. 15. 접수 제10029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3. 결 론

이상과 같은 이유로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삼척시 E 임야 21,950.5㎡
2. 삼척시 F 임야 1,560.5㎡. 끝.

